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부당특약 무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선금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해지 요건 등의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편집자 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

- 개정 및 시행일 : 2014. 12. 31
- 주요내용

○계약변경 시 서면변경 및 대금정산 의무조항 신설(제2조)

- 공사 내용변경, 일시중지의 경우 상호 합의한 서면으로 변경 의무화
- 계약변경 시 변경 전 하도급자가 수행한 공사부분은 정산지급 명시

제2조 (계약변경)

-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
- ② 계약의 변경으로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공사내용 등이 변경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하여 지급**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추가공사 시 서면발급 및 대금지급 의무조항 신설(제3조)**

- 추가공사 시 원도급자의 서면발급 의무화
- 원도급자의 지시로 추가 공사 시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 받지 못해도 하도급자에게 증액 지급

제3조 (추가공사)

-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 ② 추가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하도급대금 및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한다.

○ **추가공사 추정방법 명확화 및 확인요청자 확대(제4조)**

- 추가공사의 위탁사실 확인요청 방법을 명확화하고, 확인요청자를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등으로 확대

제4조 (추가공사 추정)

- ①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위탁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추가공사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한다.
- ③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④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감독자 또는 현장소장이 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 **부당특약 무효 조항 신설(제5조)**

- 상호 합의하여 특약설정 시 하도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 요구 금지
-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칙적 무효

제5조 (특약설정)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② 특약의 내용이 **이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적정한 하도급 계약금액 결정 조항 신설(제9조)**

- 계약금액은 상호 서면 합의한 경우만 변경 가능
- 추가공사 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일반적인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강요 금지

제9조 (계약금액 등의 결정)

-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추가로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사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 ③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제12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어음은 만기일, 외담대는 상환 기일까지 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 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제한

제12조 (지급보증 등)

-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 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원사업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목적물의 기성률, 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일괄 지급보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 ⑤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으로 지급촉구를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한다.
- ⑧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각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 ⑪ 수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 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당 계약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⑫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지정 물품 구매·사용 강제 금지 조항 신설(제18조)

-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지정 물품, 장비 등의 매입·사용 강제 금지

제18조 (구매강제 금지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 신설(제20조)

- 하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 취소·변경 및 검사 끝난 목적물 인수 거부·지연행위 금지

제20조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

- 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명확화(제27조)

- 하도급대금 지급 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결제비율 및 어음 만기일 준수

제27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② 원사업자가 도급공사 등의 완공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③ 원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월 1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성부분이 없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하고,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만 지급한다.
- ⑤ 원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 ⑥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다.
- ⑦ 제4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제6항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 **부당 감액 시 지연이자 지급 조항 신설(제28조)**

- 하도급자 귀책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제28조 (감액금지)

-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감액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 **대물변제 금지규정 명확화(제29조)**

- 대물변제 시 물품의 권리 · 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하도급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제29조 (대물변제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 2. 자료의 주요 목차
 -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조항 신설(제33조)**

-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하도급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 제한 행위 금지

제33조 (선급금)

-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계약의 위탁을 하기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계약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 ④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은 하도급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을 따른다.
-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 ⑦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⑧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의 사용시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급잔액에 대한 일반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하자담보책임 규정 명확화(제35조)**

- 하도급자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 면책
-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시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가능

제35조 (하자담보책임 등)

-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써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수급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의무 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 ⑤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상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 원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하도급자 공사중지 요청 권한 확대(제37조)**

- 선급금, 기성금 미지급한 경우 이외에 추가공사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가 공사중지 요청 가능

제37조 (공사중지)

- ①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 중지 기간은 제36조의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 **계약해제 · 해지 요건 확대 및 명확화(제38조)**

- 원도급자의 금융기관 거래정지, 등록말소 · 영업정지, 어음 부도, 제3자의 강제집행, 파산 · 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하도급자가 계약해지 요청 가능

제38조 (계약해제·해지)

-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공사업 등록 말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함으로써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위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공사 위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 원사업자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7. 제2조를 포함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12조에 정한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12조에 정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변제한다.
- ④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보증금을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제5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⑦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제17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7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 분쟁조정기관 확대(제43조)

- 분쟁조정 중재기관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외에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등 포함

제43조 (분쟁해결)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위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 ②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조항 신설(제44조)

- 원도급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44조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안전의무 조항 신설(제45조)

- 하도급자는 공사 시공 시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한 관련법규 준수 등

제45조 (수급사업자 안전의무)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안전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며,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에게 지도·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